

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발생시점

-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다16558 판결을 중심으로 -

김 동 현*

<차례> _____

I. 서설

IV. 다른 사례와의 비교

II.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V. 결론

III. 이 사건의 판결내용

주제어: 보증보험, 보험사고의 발생시점, 소멸시효, 채무불이행, 하자보수의무

<국문초록>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때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보험사고의 발생시점을 특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행(하자)보증보험에 대한 보험사고의 발생시점에 관하여, 대법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가 그에 대한 하자보수를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시점 또는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된 후 소가 제기된 시점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6558 판결).

그러나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거나 또는 채무자에게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불이행(이행지체 및 이행거절) 또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경우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이행(하자)보증보험약관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므로, 보증보험기간 내에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이행지체 및 이행거절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및 소멸시효의 진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법률사무소 智賢 변호사

- 논문접수일(2015.5.29), 심사개시일(2015.6.5), 게재확정일(2015.6.20.).

I. 서설

보험사고란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구체화시키는 우연한 사고를 가리킨다. 보험 사고는 명확하여야 하는데, 보험계약에서 특정될 수 있다.¹⁾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란, 그것을 원인으로 피보험이익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일정한 사실을 가리킨다.²⁾ 즉 보험 기간 중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보험자는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보증보험(guaranty insurance, 또는 surety bond)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주계약상의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³⁾

이러한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란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요건이며, 동시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기도 한다.⁴⁾ 따라서 보험사고의 의미와 발생시점을 특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보증보험의 경우 계약의 해석에 따라 보험사고의 의미와 발생시점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인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6558 판결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것으로, 이행(하자)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의 의미와 발생시점을 다루고 있으며, 원심인 서울고법 2013. 1. 23. 선고 2012나32357 판결에서 인정한 보험사고의 발생시점과 다른 해석을 하였고,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1)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131쪽.

2) 김성태, 전개서, 408, 409쪽.

3)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1, 803쪽,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등.

4) 예외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시점과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다른 경우도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의 요지: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아래에서는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의미와 발생 시점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II.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1. 원고의 지위

원고는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 9개동 499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을 위해 아래 <표 1>의 '공사명'란 기재 각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업체'란 기재 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순번	하도급업체	공사명	보험가입금액	계약금액	청구금액	보험기간 겸 하자담보기간
1	(주)R	미장공사	22,837,847원	761,261,580원	11,203,207원	2005.11.1.~ 2008.10.31.
2	(주)O	견출 및 코킹공사	13,040,159원	434,671,970원	682,124원	2005.11.1.~ 2006.10.31.
3	(주)P	산벽공사	6,846,840원	228,228,000원	382,994원	2005.10.31.~ 2007.10.30.
4	(주)S	설비기계공사	68,078,571원	2,269,285,731원	34,091,685원	2005.10.31.~ 2008.10.30.
5	(주)T	주방가구공사	31,707,489원	1,056,916,300원	10,449,235원	2005.12.1.~ 2007.11.30.
		일반가구공사	16,995,000원	566,500,000원		2005.8.31.~ 2007.8.30.
6	(주)Q	약세사리류	5,582,500원	111,650,000원	1,005,987원	2005.10.7.~ 2006.10.6.

2.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 체결

하도급업체들은 해당 하도급공사를 완료한 후 그 하도급공사에 관한 하자보

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각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 하자담보기간, 보험가입금액을 위 <표 1>에 기재된 각 기간 및 금액으로 하는 내용의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함)을 각 체결하였다. 위 하도급업체들은 원고에게 각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였다.

3. 하자의 발생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

이 사건 아파트는 2005. 10. 7.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그 직후부터 다수의 하자가 발생됨에 따라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함)는 사용검사가 있는 때로부터 9개월 남짓 지난 2006. 7.경부터 지속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하자보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하자보수를 하여주지 아니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시공, 미시공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하게 시공되어 외벽 균열 등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5. 16. 원고와 원고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46604호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前訴’라 함)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前訴의 제1심은 2009. 10. 20. 원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다수의 하자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는 건설공제조합과 각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352,676,3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서울고법 2009나121547호)은 2010. 5. 14.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가 집행된 돈 362,725,167원 이외에 추가하여 196,690,000원을 2010. 7. 18.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2010. 6. 8.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前訴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장한 하자 중에는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주장하는 하도급업체(이하에서는 위 표의 하도급업체 중 R, S, T를 지칭하여 ‘이 사건 하도급업체’라고 함)의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이 사건 하자 부

5) 이 사건의 원심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前訴의 항소심은 2010. 5. 14.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추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세대가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

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4. 이 사건 소의 제기

원고는 2011. 3. 17. 피고(서울보증보험)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⁶⁾

한편 이 사건 前訴가 제기된 2008. 5. 16.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1. 3. 17.까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는 자료 또는 이 사건 하도급업체가 원고를 위하여 하자보수를 해주었다는 자료는 기록상 발견되지 않았다.

Ⅲ. 이 사건의 판결내용

1. 원심 판결의 내용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업체가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 중 각 해당 공정을 시공함에 있어 그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보증하였는데, 시공한 공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업체가 담당한 공정에서 발생한 하자보수비용과 관련하여 피고가 보증한 범위 내에서 별지의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을 하자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증보험약관에 따르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고,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하자가 발생한 때 또는 그 하자 발생사실을 원고가 알았을 때 내지 보험기간이 만료한 때라고 할 것이므로, 이

6) 이 사건의 원심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의 하도급업체들 중 일부는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하자보수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각 계약체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서울보증보험) 뿐만 아니라 건설공제조합에 대해서도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해 당사자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대법원에서 판단되지 않았다.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2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원심의 판단

1) 보험사고의 의미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업체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보증보험약관 제1조에는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피고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도급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업체와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도급 계약조건’ 제18조(계약이행 및 하자담보) 또는 제20조(하자담보)에는 “1. 하도급업체는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율(3% 정도)을 계약금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기를 지급요청 할 때까지 현금 또는 증서로서 원고에게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의 성질상 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하도급업체는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서 정하는 하자보수의무기간 중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3. 하도급업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무기간 중 원고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하도급업체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에는 보험기간 및 하자담보기간이 1년, 2년, 3년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앞서 본 법리⁷⁾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업체

7) 원심은 앞서 원고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는 각종 보증에 있어서의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인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책임을 구체화하여 정하는 불확정한

사이의 각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보험채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사유가 되는 보험사고라 함은,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고, 원고가 하자담보기간 내에 위 하도급업체들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위 하도급업체들이 그 하자의 보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보험사고 발생여부에 관한 개별적 판단

가) 별지 순번 2, 3, 6 부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순번 2), P(순번 3), Q(순번 6)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각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 하자에 관하여 하자담보기간 내에 위 하도급업체들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였다거나, 위 하도급업체들이 그러한 요구를 받고서도 불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하도급업체들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하도급업체들이 미리 하자보수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하도급업체들의 시공상 하자 부분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증보험채권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별지 순번 1 부분(R)

갑 제2,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R의 시공상의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 내용에 편입된 보증약관과 보증서 및 주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8788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5199 판결)."라고 실시한 법리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 8)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보증에 있어서의 보증사고에 관한 법리는, 보증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즉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에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7978 판결 등)라는 것이다.

잘못으로 하자담보기간 내에 공용부분 하자(하자내용 생략)가 발생한 사실, ② 원고는 하자담보기간 내인 2007. 10. 9. R에게 위 인정된 각 하자 모두에 관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한 사실, ③ 원고의 위 하자보수요구에도 불구하고 R은 그 하자의 보수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하자내용 모두에 관하여 원고가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R이 그러한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보증보험책임 범위는 7,741,431원⁹⁾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¹⁰⁾

다) 별지 순번 4 부분(S)

갑 제2호증, 갑 제3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S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하자담보기간 내에 공용부분 일부의 하자과 전유부분 하자가 발생한 사실, ② 원고는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인 2006. 6. 9. S에게 위 인정된 각 하자내용 중 공용부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한 사실, ③ 원고의 위 하자보수요구에도 불구하고 S는 그 하자의 보수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하자내용 중 공용부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 원고가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S가 그러한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보증보험책임의 범위는 28,975,389원¹¹⁾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별지 순번 5 부분(T)

갑 제2호증, 갑 제3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T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하자담보기간 내에 전유부분 하자가 발생한 사실,

9) 공용부분 하자의 각 보수비를 합한 금액

10) R의 시공상의 하자으로 인한 보증보험채권의 청구금액은 11,203,207원이나, 원고가 R에게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한 부분에 해당하는 7,741,431원에 관하여만 인정되고, 나머지 청구금액은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지 하자담보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소송고지 또는 소제기가 이루어져 인정되지 않았다.

11) 전유부분 하자의 각 보수비를 합한 금액

② 원고는 하자담보기간 내인 2006. 6. 9. T에게 위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한 사실, ③ 원고의 위 하자보수요구에도 불구하고 T는 그 하자의 보수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하자내용에 관하여 원고가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T가 그러한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보증보험책임 범위는 10,449,235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이 사건 前訴에서 하자감정이 실시되기까지 약 3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들 가운데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입주자들의 사용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前訴에서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95%로 제한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이 사건 하도급업체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95%로 제한하고, 보증계약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는 5%의 비율에 의하여 감액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보증보험책임을 부담한다.

4)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보험약관 제4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리고 ① 보험금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기재한 보험금 청구서, ② 보험증권 또는 그 사본, ③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증보험약관 제1조에는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피고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도급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

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사고는 ‘하자의 발생’ 그 자체 또는 ‘피보험자가 하자의 발생사실을 알았을 때’ 내지 ‘보험기간이 만료하였을 때’가 아니라 ‘준공검사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가 그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상당한 시간 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객관적으로 보험계약자에 의한 하자보수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1. 3. 17.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전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상판결(대법원 판결)의 내용

(1) 보험사고의 의미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¹²⁾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준공검사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가 그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년이다.

12)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2) 소멸시효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아파트는 사용검사 직후부터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시공사인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또한 이 사건 하자 부분이 포함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이 사건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 또는 이 사건 하도급업체를 포함한 하도급업체들에 의한 하자보수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2008. 5. 16.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前訴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늦어도 이 사건 前訴가 제기될 무렵인 2008. 5. 16.경(다만, R은 2008. 10. 31.에, S는 2008. 10. 30.에 각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므로, 위 회사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 사건 前訴 제기 이후로서 위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될 무렵)에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업체로부터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의 상태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에 따라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소는 그 때로부터 2년이 지난 2011. 3. 17.에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1. 3. 17.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전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시효소멸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 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대상판결의 정리

	별지 순번 1(R)	별지 순번 4(S)	별지 순번 5(T)
보험사고 의미	① 준공검사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 ② 보험계약자가 하자에 대한 보수/보완청구를 받음 ③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 (+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된 상태)		

하자담보기간 만료일	2008. 10. 31.	2008. 10. 30	㉠ 2007. 11. 30. ㉡ 2007. 8. 30.
보험사고 발생시점	前訴 제기 후 하자담보기간 만료일 무렵	前訴 제기 후 하자담보기간 만료일 무렵	前訴 제기 무렵 (2008. 5. 16.경)

4. 대상판결의 문제점

서울보증보험(주)의 이행(하자)보증보험의 보통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위 보통약관 제1조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즉 보험사고란 채무불이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채무불이행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 이행지체, ㉡ 이행불능, ㉢ 불완전이행, ㉣ 이행거절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¹³⁾

	요 건	효 과
이행지체	① 이행기 경과(이행 가능) ② 유책사유 ③ 위법성	㉠ 지연배상 ㉡ 계약해제 ㉢ 전보배상(계약해제 시)
이행불능	① 이행 불가능 ② 유책사유 ③ 위법성	㉠ 전보배상 ㉡ 계약해제 ㉢ 대상청구권

13) 박윤직, 「채권총론[민법강의Ⅲ]」, 박영사, 2003, 73쪽 이하.

불완전이행	① 이행 불완전(이행 존재) ② 유책사유 ③ 위법성	㉠ 완전이행·추완 청구권 ㉡ 전보배상 ㉢ 계약해제
이행거절 ¹⁴⁾	① 이행 거절(이행 가능) ② 유책사유 ③ 위법성	㉠ 계약해제 ㉡ 전보배상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하도급업체는 원고에 대하여 주계약인 하도급계약상 하자보수의무¹⁵⁾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그 이행을 거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¹⁶⁾

이 사건 하도급업체의 하자보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이 경과하면 이행지체에 의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¹⁷⁾ 다만 이 사건 하도급업체가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거절한 경우에는 최초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시점에 채무불이행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늦어도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업체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최초로 요구한 날(즉, R에 대하여는 2007. 10. 9.에, S에 대하여는 2006. 6. 9.에, T에 대하여는 2006. 6. 9.)로부터 통상적으로 하자보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는 하자보수의무의 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¹⁸⁾

14) 박윤직 등, 「민법주해 제Ⅸ권, 채권(2)」, 박영사, 2004, 311쪽 이하.

15)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도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 제2항은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6) 앞의 III. 1. (3) “3) 책임의 제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업체는 하자감정이 실시되기까지 약 3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우며, 입주자들의 사용·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 또는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하자보수의무의 성립을 부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17) 박윤직 등, 「민법주해 제XV권, 채권(8)」, 박영사, 2009, 456쪽 이하.

18)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가 정하는 수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

그럼에도 대상판결은, R에 대하여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08. 10. 31.에, S에 대하여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08. 10. 30.에, T에 대하여는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된 후로서 이 사건 前訴가 제기될 무렵인 2008. 5. 16.에, 각 하자보수의무의 불이행의 상태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는 원고가 위 각 시점에 이 사건 하도급업체로부터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된 사정을 들고 있다.

그러나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사정”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불이행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보증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더 나아가 대상판결은 T에 대하여 이 사건 前訴(입주자대표회의 → 원고)가 제기된 시점이 보험사고의 발생시점(즉 채무불이행이 성립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는데,¹⁹⁾ 보험사고의 발생시점을 하도급업체 사이에 달리 본 근거가 무엇인지도 의문이다.

결국 대상판결은 적절한 근거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시점을 다르게 인정한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IV. 다른 사례와의 비교

1. 비교의 목적

아래에서는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시점에 관한 다른 사례들²⁰⁾을 대상판결과 비교해보면서 보험사고의 발생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등).

19) 대상판결은 T에 대하여 “늦어도 이 사건 前訴가 제기될 무렵인 2008. 5. 16.경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20) 대상판결과 비교를 위해 제시한 다른 사례들은 필요한 부분에 한해 발췌·인용하였으며, 소문이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2. 이행보증보험 사건 - 임대보증금 반환의무

임대인은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4억 원, 임대기간: 1997. 1. 18.부터 1999. 1. 17.까지로 정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을 임대차계약상 임대기간과 동일하게 정하여 서울보증보험과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정해지권 행사에 따라 1998. 8. 25.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이행보증보험의 보통약관 제1조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① (이행보증보험)약관상 보험계약자(임대인)가 보험기간 내에 이행기일이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임차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행지체에 의한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② (이행보증)보험계약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일 뿐, 그 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③ 특히 주계약상의 임대기간과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사건에서, 만약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행기일’을 건물을 명도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함으로써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때, 즉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른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통상의 경우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란 상정하기 어려워 보험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책임을 면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는 약관은 결국 무의미한 규정이 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대기간이 만료하거나 중도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보험사고는 이미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 28553 판결).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

지 않는 경우, 비록 동시이행의 항변권²¹⁾이 존재하여 민법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행보증보험계약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3. 인·허가보증보험 사건 - 적지복구비 예치금

산림 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소외 회사는 피보험자: 김해시장, 보험금액: 185,689,000원, 보험기간: 1997. 10. 25.부터 2000. 4. 24.까지로 하여 구 산림법(현 산지관리법)에 의한 적지복구비 예치금 보증을 보증내용으로 하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김해시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김해시는 1998. 12. 22. 적지복구비 226,211,000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 2000. 6. 12.까지)을 1999. 1. 21.까지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토석채취 변경허가를 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1999. 1. 21.까지 추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자, 김해시는 1999. 9. 18.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고, 소외 회사에게 산림훼손지 적지복구를 할 것을 통보하면서 적지복구 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김해시는 1999. 12.경 소외 회사로부터 적지복구 설계서를 제출받은 뒤, 2000. 1. 12. 토석채취 적지복구사업을 시행할 것을 승인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적지복구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않자, 김해시는 2000. 2. 18. 및 2000. 3. 15.에 적지복구사업을 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소외 회사는 전혀 적지복구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김해시는 2000. 6. 1. 서울보증보험에게 인·허가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허가보증보험의 보통약관 제1조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인·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보험기간 안에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21)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인·허가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가 토석채취변경 허가를 받으면서 산림훼손 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을 허가관청에 예치함에 있어서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토석채취허가의 조건인 적지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 즉,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적지복구에 관한 행정대집행을 의뢰하고 그 비용을 실제 지급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인·허가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자가 토석채취허가의 조건인 산림훼손부분에 대한 복구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김해시로부터 수회 복구사업을 시행하도록 독촉을 받고도 사업시행승인 후 2~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복구사업을 착수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복구의무 불이행 상태가 사실상 확정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김해시가 최종적으로 복구사업의 시행을 촉구한 2000. 3. 15.경에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4563 판결).

4. 신원보증보험 사건 - 불법행위

증권회사는 1993. 12.경 보증보험회사와 사이에, 증권회사의 지점장을 피보증인으로 하고, 보험기간: 1993. 12. 22.부터 1994. 12. 21.까지로 하여, 지점장이 증권회사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절도·강도·사기·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인 증권회사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 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한다)를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지점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유가증권위탁 매매거래를 하던 고객으로부터 그의 계좌에 입금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1994. 5. 11.에 5,000만원을, 같은 해 9. 1.에 7,500만원을 각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그 계좌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횡령행위가 증권회사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

어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행한 행위로서 보증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면, 비록 지점장이 증권회사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라 입금시켜 달라고 부탁받은 돈을 횡령한 것이고, 증권회사는 1996. 8. 5. 피해자의 진정이 있는 후에야 비로소 그 횡령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횡령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그 발생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 60613 판결).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험사고가 횡령행위 시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더 나아가 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위 사건의 횡령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발생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원칙에 따라 보험사고 시점으로 인정하였다.

V. 결 론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상 보험금 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서, 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의미와 발생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자의 이해관계가 얽힌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법원은 관련 법령과 약관의 해석을 통해 보험사고의 의미와 발생시점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보증보험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의 계약상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무엇인지, 피보험자가 전보 받아야 할 손해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보험사고의 의미와 발생시점을 특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대상판결에서, 이 사건 하도급업체가 이행(하자)보증보험을 체결한 것은 하도급계약상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 하였을 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²²⁾ 또 피보험자(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업체가 하자

22) 이는 이 사건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법 제667조 제2항에 규정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앞서 임대보증금 반환의무에 관한

보수의무를 불이행 하였을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청구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전보받기를 원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의 보험사고는, 원고가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한 시점으로서, R에 대하여는 2007. 10. 9.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약 2~3개월 정도)이 경과한 시점에, S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를 최종적으로 요구한 날인 2006. 8. 3.경에, T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최종적으로 요구한 날인 2006. 9. 26.경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대상판결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결론에는 동의하나, 보험사고의 발생시점은 정확하게 판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첨언하여, 이 사건은 보험사고의 발생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에 따라 보험사고인 채무불이행 시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판단했어야 할 것이다.

이행보증보험 사건의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28553 판결 참조).

참고문헌

-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1
- 곽윤직, 「채권총론(민법강의Ⅲ)」, 박영사, 2003,
- 곽윤직 등, 「민법주해 제Ⅸ권, 채권(2)」, 박영사, 2004
- 곽윤직 등, 「민법주해 제Ⅹ V권, 채권(8)」, 박영사, 2009

<Abstract>

The Time of Occurrence of the Insurance Accident in Surety Bond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dated 16 May
204 (Case No. 2013Da16558) -

Kim, Dong-Hyun

In case of occurrence of the insurance accident, the insurance company is responsible for paying the insurance money, thenceforth the limitation period of the insurance claim will commence.

As regards the time of occurrence of the insurance accident in the performance (defect) surety bond,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decided that the insurance accident occurred under the surety bond when it became hard to expect the performance of the repair of the defect.

However, the insurance accident under the surety bond is not related to the difficult situation, but the default of obligation by the policyholder.

The surety bond is to cover the insured's damage caused by the policyholder's default of obligation. Thus it is construed that the insurance accident under the surety bond occurs at the very moment when the policyholder has delayed and/or refused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 during the insurance period, and that the period of limitation will run from the moment.

Key Words : Surety Bond, Time of Occurrence of Insurance Accident, Statute of Limitations, Default of Obligation, The Obligation of the Repair of the Defect